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정미 의원 외 13명

2.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안 제5조 제1항, 제2항)
 - 출산축하금 :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분할(2회)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둘째자녀 3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둘째자녀 60만원, 셋째자녀 이상 120만원을 월별 분할(1년) 지원
- 시행시기 (안 부칙)

4. 참고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 주요 내용은

- 먼저, 안 제5조 1항에서는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항에서는 둘째 자녀 6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20만원을 지원하는출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둘째자녀부터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경상북도 조례나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였음.

구미 보건소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둘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의 확대지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제출산율의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가져왔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